[별표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 (제5조 및 제6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 (이하 "조직")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설계·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이 기준이 적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6. 자원관리, 7. 제품실현, 8. 측정·분석 및 개선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직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4.2.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다.

3. 용어의 정의

- 가. 조직은 이 기준 중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이 달리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나. 이 기준 요구사항이 "문서화 해야한다"일 경우, 이것은 수립, 실행 및 유지할 것을 포함하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용어의 정의는 별표 1을 따른다.

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 4.1.1 가.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문서화되어 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 절차, 활동 또는 방식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 4.1.2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1)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
 - 2)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을 적용
 - 3) 이러한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작용을 결정
- 4.1.3 각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 야 한다.
 - 1)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 2)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이

- 용 가능하도록 보장
- 3)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
- 4) 이러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해당되는 경우 측정 및 분석
- 5) 이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 4.1.4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품 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1) 프로세스의 변경이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 2) 프로세스의 변경이 해당 품질경영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체외진단의료 기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 3)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관리
- 4.1.5 가. 조직이 제품의 적합성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 세스를 위탁하는 경우, 조직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링 되고 관리됨 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위탁한 프로세스에 대해 이 기준과 고객 및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위탁한 프로세스의 관리는 관련된 위험 및 7.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위탁업체의 능력에 비례하여야 하고, 서면 품질합의 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4.1.6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유효 성 확인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은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재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활동들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 다.
 - 라. 이러한 활동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서화된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2) 품질매뉴얼
- 3) 이 기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 4) 조직이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들로, 기록을 포함
- 5) 그 밖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규정된 다른 문서화 요구사항

4.2.2 품질매뉴얼

- 가.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매뉴얼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적용 제외 또는 비적용 되는 세부내용 및 그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 2)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 및 이에 대한 참조문서
-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 나. 품질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2.3 체외진단의료기기 파일

- 가. 조직은 각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해, 이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위해, 생성된 문서를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파일을 만들어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체외진단의료기기 파일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것들로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용용도/사용목적 및 모든 사용지침을 포함한 기재사항
- 2) 제품에 대한 사양
- 3) 제조, 포장, 보관, 취급 및 유통에 관한 규격 및 절차
- 4)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 5) 해당하는 경우,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6)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4.2.4 문서관리

- 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4.2.5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나.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 승인
-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갱신 및 재승인
-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됨을 보장
- 4) 적용되는 문서의 유효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 5) 문서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 6)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 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배포상태가 관리됨을 보장
- 7)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
- 8)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방법을 적용
- 다. 조직은 문서 변경이 조직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 승인권자 또는 다른 지정된 권한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 라. 조직은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의 최소 1부를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한 기록의 보유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4.2.5 기록관리

-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안 및 완전성,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 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라. 모든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마.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최고 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의 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1)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의사소통
- 2) 품질방침 수립
- 3) 품질목표 수립을 보장
- 4) 경영검토 수행
- 5)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

5.2 고객중심

최고 경영자는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품질방침

최고 경영자는 품질방침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 2)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포함할 것
- 3)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 4)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될 것
- 5) 지속적인 적절성을 위하여 검토될 것

5.4 기 획

5.4.1 품질목표

- 가. 최고 경영자는 품질목표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직 내의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품질목표는 측정 가능하여야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4.2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품질경영시스템 기획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4.1 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행할 것
- 2)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5.5.1 책임과 권한

가.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고, 문서화되어 의

사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최고 경영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5.2 품질책임자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 2) 최고 경영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보고
- 3)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5.3 내부 의사소통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 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 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5.6.1 일반 요구사항

-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

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Input)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피드백
- 2) 불만처리
-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 4) 감사
-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 7) 시정조치
- 8) 예방조치
-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Output)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 3)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
- 4) 자원의 필요성

6. 자원관리

6.1 자원의 확보

조직은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 1)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그 효과성 유지
- 2)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

6.2 인적자원

- 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교육, 훈 련, 숙련도 및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조직은 인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립하고, 인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며, 인원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야한다.
- 다. 조직은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결정
- 2) 필요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조 치 실시
- 3)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평가
- 4) 조직의 인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 으며, 이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
- 5) 교육, 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

6.3. 기반시설

-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혼입을 방지하며 순차적인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기반시설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건물, 작업 공간 및 관련된 부대시설
- 2)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3) 운송, 통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지원 서비스
- 나. 조직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기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요구사항은 제조,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된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이러한 유지활동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6.4 작업환경과 오염관리

6.4.1 작업환경

-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작업환경 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만일 작업환경조건이 제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사항과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다음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작업원이 제품 또는 작업환경과 접촉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업원의 건강, 청결 및 복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2) 특별한 환경조건에서 임시로 작업하는 모든 인원은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역량을 갖춘 인원에 의해 감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4.2 오염관리

- 가.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작업환경, 작업원 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되었거나 잠재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멸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조직은 미생물이나 미립자로 인한 오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립 또는 포장공정 중 요구되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 가. 조직은 제품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제품실현의 기획은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나. 조직은 제품 실현 시, 위험 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를 문 서화 하여야 하며,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다.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제품실현의 기획에 있어 다음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품질목표 및 요구 사항
- 2) 프로세스 수립 및 문서화, 그리고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을 포함하여 제품에 대한 특정한 자원 확보의 필요성
- 3) 제품 적합 판정 기준과 함께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검증, 유효성 확인, 모니터링, 측정, 시험검사, 취급, 보관, 유통 및 추적 활동
- 4) 제품실현 프로세스 및 그 산출물이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 라. 이러한 기획의 출력은 조직의 운영방식에 적절한 형태로 문서화되어 야 한다.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7.2.1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 2) 고객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알려져 있는 명시된 사용 또는 의도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3)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 4)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시된 성능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훈련
- 5) 그 밖에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7.2.2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검토

가. 조직은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조 직이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문서화할 것
- 2) 이전에 제시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 3)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 될 것
- 4) 7.2.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 훈련이 가능하거나 가능하도록 계획 될 것
 - 5) 조직은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나. 검토 결과 및 검토에 따라 수반되는 조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지 않는 경우, 조직은 수락 전에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은 관련 문서를 변경하고 관련 된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7.2.3 의사소통

- 가. 조직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계획 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 1) 제품정보
- 2) 수정사항을 포함한 문의, 계약 또는 주문 처리
- 3) 불만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 4) 권고문
- 나.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규제 당국과 의사소통 하여 야 한다.

7.3. 설계 및 개발

7.3.1 일반사항

조직은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3.2 설계 및 개발 계획

- 가. 조직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설계 및 개발 계획 문서는 설계 및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유지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 나. 조직은 설계 및 개발 계획 중에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설계 및 개발 단계
 - 2)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필요한 검토
 - 3)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적절한 검증, 유효성 확인 및 설계이관 활동
 - 4)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
 - 5)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출력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 6) 필요한 인원의 역량을 포함한 필요 자원

7.3.3 설계 및 개발 입력

-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입력 사항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입력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의도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 성능, 사용적합성 및 안전 요구사항
- 2)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및 표준(standards)
- 3) 적용되는 위험관리 출력물
- 4) 해당되는 경우, 이전의 유사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 5) 제품 및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 나. 이러한 입력은 적절성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다. 제품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되거나 유효 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7.3.4 설계 및 개발 출력

- 가. 설계 및 개발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설계 및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
- 2)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 3) 제품 적합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 4)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 나.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의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사항과 비교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 다. 설계 및 개발 출력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3.5 설계 및 개발 검토(review)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계획 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개발 결과의 능력에 대한 평가
- 2) 필요한 조치의 파악 및 제시
- 나. 이러한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은 검토 중인 설계 및 개발 단계와 관련되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 검토 결과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고, 검토 중인 설계의 식별, 검토에 참여한 인원 그리고 검토 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7.3.6 설계 및 개발 검증(verification)

- 가.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설계 및 개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검증 방법, 합격 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샘플 크기에 대한 근 거와 함께 통계 기법을 포함한 검증 계획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 다. 의도된 사용에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연결 또는 접속하도록 요구한다면, 검증은 그렇게 연결되거나 접속될 때 설계 출력이 설계 입력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라. 검증 결과 및 결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3.7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validation)

- 가.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은 결과물인 제품이 의도된 사용 또는 명시 된 적용(specified application)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나. 조직은 유효성 확인의 방법, 합격기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샘플 크기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유효성 확인 계획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 다. 설계 유효성 확인은 대표 제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대표 제품은 초기 생산 단위, 배치 또는 그와 동등한 제품을 포함한다. 유효성확인에 사용된 제품 선택 근거는 기록되어야 한다.
- 라.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의 일부로서,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마.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 사용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고객의 사용을 위해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바. 의도된 사용에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연결 또는 접속하도록 요구된다면, 그렇게 연결하거나 접속할 때 명시된 적용이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을 포함하여 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사. 유효성 확인은 고객의 사용을 위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완료되어 야 한다.
- 아. 유효성확인 결과와 결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3.8 설계 및 개발 이관

- 가. 조직은 설계 및 개발 출력을 제조로 이관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최종 생산 사양으로 되기 전에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생산 능력이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이관 결과와 결론은 기록되어야 한다.

7.3.9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관리

- 가. 조직은 설계 및 개발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능, 성능, 사용적합성, 안전성, 적용되는 법적요구사항 및 의도된 사용의 변경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변경 실행 전에, 변경사항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검토
- 2) 검증
- 3) 해당되는 경우, 유효성 확인

- 4) 승인
- 다.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검토는 구성부품, 제조중이거나 이미 인도된 및 제품, 위험관리의 입력 또는 출력, 그리고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라. 변경과 변경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3.10 설계 및 개발 파일

- 가. 조직은 각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파일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이 파일은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성된 기록과, 설계 및 개발 변경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거나 참 조하여야 한다.

7.4. 구매

7.4.1 구매 프로세스

- 가. 조직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절차 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준 은 다음사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1)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2) 공급자의 성과
- 3) 구매한 제품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 4)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된 위험에 비례

- 다. 조직은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매한 제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급자의 성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공급자 재평가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제공해야 한다.
- 라. 구매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구매 제품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와 비례하여 공급자와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 마. 공급자 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 선정, 모니터링 및 재평가 결과 와, 이러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 은 유지되어야 한다.

7.4.2 구매정보

- 가. 구매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제품을 기술하거나 참조해야 한다.
 - 1) 제품 사양
 - 2) 제품의 승인,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 3) 공급자 인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 4)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나. 조직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다. 구매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가 조직이 규정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매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제품의 변경사항을 조직에게 통보하는 서면합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조직은 7.5.9항에 규정된 추적성이 요구되는 범위까지, 관련 구매정보

를 문서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7.4.3 구매품의 검증

- 가. 조직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검증 활동의 범위는 공급자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매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이 구매 제품에 대한 어떤 변경을 알게 될 때, 조직은 이러한 변경이 제품실현 프로세스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조직 또는 조직의 고객이 공급자의 현장에서 구매 제품을 검증하고 자 하는 경우, 조직은 구매 정보에 의도된 검증 활동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 검증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리

- 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제품이 사양과 일치함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 되고, 실행되며, 모니터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생산관 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다음사항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생산 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문서
 - 2) 기반시설의 적격성
- 3) 공정 매개변수 및 제품 특성 모니터링 및 측정 실행
- 4)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사용 가능성과 사용

- 5) 기재사항 및 포장 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활동의 실행
- 6) 제품 출고,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 나. 조직은 7.5.9항에 규정된 범위까지 추적성을 제공하고, 생산 및 판매 승인된 수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체외진단의료기기별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배치별 기록을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검증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7.5.2 제품의 청결

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청결 또는 제품 오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1) 또는 2)에 적합하게 세척되는 경우 6.4.1항의 요구사항은 세척공정 이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조직에 의하여 세척(clean)되는 제품
- 2)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 공정(cleaning process)을 필요로 하는 비 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제품
- 3) 제품이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될 수 없고,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 4)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며,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 5) 공정에서의 사용물질(process agents)이 제조과정에서 제품으로부터 제거되는 것

7.5.3 설치 활동

- 가.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설치 및 설치 검증을 위한 허용기준(acceptance criteria)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고객이 조직이나 공급자 이외에 외부 관계자에 의한 설치를 허용한 경

- 우,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설치 및 설치 검증을 위한 문서화된 요 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설치 및 설치 검증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4 서비스 활동

-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서비스 활동 수행과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필요 시서비스 절차, 참고 자료(Reference materials) 및 측정기준(Reference me asurements)을 문서화해야 한다.
- 나.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직 또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야 한다.
- 1) 정보가 불만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결정
- 2) 해당되는 경우, 개선 프로세스의 입력
- 다. 조직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서비스 활동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5 멸균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조직은 각 멸균 배치에 사용된 멸균공정의 매개변수(parameter)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멸균기록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각 생산 배 치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7.5.6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Validation)

가. 조직은 결과로 나타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 여 검증될 수 없는 모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대하여 유효성

- 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효성 확인에는 제품의 사용 또는 서비스 인도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 나. 유효성 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일관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다음을 포함한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문서화하여 야 한다.
 - 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규정된 기준
- 2) 장비 및 인원의 적격성
- 3) 특정한 방법, 절차 및 합격 기준의 사용
- 4) 해당되는 경우, 샘플 크기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통계적 기법
- 5)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 6) 유효성 재확인 기준을 포함한 유효성 재확인(revalidation)
- 7)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 승인
- 라. 조직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적용은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재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활동들은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도록,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 마. 유효성 확인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7 멸균과 멸균포장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 가. 조직은 멸균 및 멸균보호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멸균 및 멸균보호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는 최초 사용 전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제품 또는 프로세스 변경 전에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유효성 확인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8 식별

- 가. 조직은 제품 식별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제품실현의 전반에 걸 쳐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제품 실현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제품의 생산, 보관, 설치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통과하거나, 승인된 특채에따라 출하된 제품만이 출고(dispatch), 사용 또는 설치됨을 보장하도록제품 상태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고유기기식별표시(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 라. 조직은 조직에게 반품된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식별되고 적합한 제품과 구별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5.9 추적성

7.5.9.1 일반 요구사항

조직은 추적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추적성의 범위와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을 규정하여야 한다.

7.5.9.2 추적관리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 가. 사용된 부품, 원자재 및 작업 환경 조건으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가 규정된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추적성이 필요한 기록에는 사용된 부품, 원자재 및 작업 환경 조건의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 나. 조직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서비스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판매 기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기록이 조사 시 이용가능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다. 출고된 제품 인수자(shipping package consignee)의 성명과 주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10 고객자산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제품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고객자산이 제조업자의 관리 하에 있거나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 중에 있는 경우, 조직은 이를 식별, 검증, 보호 및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자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11 제품의 보존

가. 조직은 가공, 보관, 취급 그리고 유통 시 요구사항에 대해,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보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구성하는 부품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가공, 보관, 취급 및 유통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건 및 위해 요인에 노출될 때,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이 변조,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포장과 운반 용기를 설계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 2) 포장으로만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특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 라. 특수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은 관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 가. 조직은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과 필요한 장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모 니터링 및 측정활동이 수행됨을 보장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다.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국제 기준 또는 국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측정표준에 의하여 사용 전 및 일정 주기로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 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할 것
 - 2)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재조정 할 것. 이러한 조정이나 재조정은 기록 할 것
- 3) 교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 4)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 할 것
- 5) 취급, 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 라. 조직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 마. 조직은 장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조직은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바. 조직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는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재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활동들은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도록,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 사. 유효성확인에 대한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으로 인해 필요 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 요구사항

- 가. 조직은 다음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 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적합성 입증
- 2)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 3)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유지
- 나. 이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절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

을 포함하여야 한다.

8.2 모니터링 및 측정

8.2.1 피드백

- 가.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 측정의 하나로, 조직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나. 이러한 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다. 조직은 피드백 프로세스를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피 드백 프로세스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라. 피드백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정보는 제품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제품 실현 또는 개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의 잠재적 입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마.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서 조직이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정보를 수 집하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는 피드백 프로세스의 일부 가 되어야 한다.

8.2.2 불만처리

- 가.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과 책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보 수신 및 기록
 - 2) 피드백이 불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평가
- 3) 불만 조사
- 4) 정보를 해당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 5) 불만 관련 제품의 처리
- 6) 시정 또는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 나. 조사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의한 모든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는 문서화되어 야 한다.
- 다. 조사결과 조직 외부의 활동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조직 내·외부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 마. 불만 처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2.3 규제 당국에 보고

- 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부작용 보고 대상 또는 권고문 발행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불만이라면, 조직은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 나. 규제 당국에 보고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2.4 내부감사

-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이 다음과 같은지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 기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계획되고 문서화된 결정사항, 이 기준 요구사항, 조직이 설정한 품질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 부
 - 2)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 나. 조직은 감사 계획 및 실시, 감사 결과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책임 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다. 감사프로그램은 감사 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감사 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감사자를 선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가수행된 프로세스 및 감사 대상 분야, 결론을 포함한 감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 되어야 한다.
- 라.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지체 없이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8.2.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되는 경우 측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프로세스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8.2.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 가. 조직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되고 문서화된 결정사항 및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나. 합격판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 출하를 승

- 인한 사람의 신원이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측정활동에 사용 된 시험 장비가 식별되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다. 계획되고 문서화된 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 제품이 출고 또 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라. 추적관리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조직은 모든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인원의 신원을 식별하고 기록해야 한다.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8.3.1 일반 사항

- 가.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은 부적합 제품의 식별, 문서화, 분리, 평가 및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련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나. 부적합의 평가에는 부적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외주업체의 조사와 통 보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 평가,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부적합 상태와 취해진 모든 후 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3.2 인도 전에 확인된 부적합 제품의 대응 조치

- 가. 조직은 부적합 제품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 2) 본래 의도된 사용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 3) 특채 하에 사용, 출고 또는 수락을 승인
- 나. 조직은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고, 승인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채가 허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채에 의한 수락 및 특채 승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8.3.3 인도 후에 확인된 부적합 제품의 대응 조치

- 가. 부적합 제품이 인도 또는 사용 후 발견되면 조직은 부적합으로 인한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나.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권고문 발행 절차를 문서화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권고문 발행과 관련된 조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3.4 재작업

- 가. 조직은 제품에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초 절차와 동일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재작업 완료 후, 제품이 적용되는 합격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 다. 재작업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4 데이터의 분석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적절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한다. 이 절차는 통계적 기법 및 그 기법의 적용 범위와 함께 적절한

방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데이터의 분석은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부터 그리고 다른 관련 출 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다음 입력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피드백
- 2)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 3) 개선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 4) 공급자
- 5) 감사
- 6)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보고서
- 다. 데이터 분석 결과 품질경영시스템이 적합, 적절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혀지면, 조직은 8.5항에서 요구되듯이 개선을 위한 입력으로 이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 개선

8.5.1 일반 요구사항

조직은 품질방침, 품질목표, 감사 결과, 시판 후 감시, 데이터분석,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인 적합성, 적절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 능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경을 식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8.5.2 시정조치

가. 조직은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필요한 시정조치는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 적합의 영향에 비례하여야 한다.
- 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부적합의 검토(고객 불만 포함)
-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 3)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4) 필요한 조치의 계획 및 문서화, 해당되는 경우 문서 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실행
- 5) 시정조치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 6)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 라. 모든 조사 결과와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3 예방조치

- 가. 조직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례하여야 한다.
- 나.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3) 필요한 조치의 계획과 문서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 함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 4) 예방조치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5)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다.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9.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표

9.1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체외진단의료기	기 적합성인정등	등 심사표
업 소 명		업 종 류 업허가번호	□ 제조 □ 수입
대 표 자		품질책임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 팩스 : F	E-mail:
적용기준	□ 1등급 체외진단의 5 □ 임상적 성능시험용 □ 수출용 체외진단의 □ 혁신의료기기소프 5 □ 의료기기공동심사 5 □ 우수제조소 ※ 해당하는 경우에	· 체외진단의료기기 료기기 트디웨어 프로그램 활용	
심사종류	□ 최초심사	□ 정기심사 □ 변	.경심사 □ 추가심사
심사방법		현장조사 [] 서류검토
심사종류 및			
방법 결정 사유			
품목	품목군 품목명/등급		
심사단	소 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심사기관 (기관명)		성 명
심사일자		~ .	
심사결과		완(까지) -목2)의 경우 시정 <i>조</i>	□ 부 적 합 조치 결과를 (0000.00.00)까지
「체외진단의료기	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 제6조에 따른 적 년	합성인정등 심사 결과입니다. 월 일
	, ,	기약품안전처 : 관리심사기관 : 표 자 :	(인) (인) (인)
9.2 심사업소	정보		
A 2 H		T법인 키키비수	

허가번호

품질책임자

□개인

	제조의뢰자 :							
	(상호명)							
심사 대상 제조소	(소재지)							
상호명/주소	제조자 :							
	(상호명)							
2	(소재지)							
제조소 상세								
시설 정보 심사담당								
부서연락처								
심사대상					근무	무시간		
종업원수					(교대/	시간 등)		
관련인증	인증기관		인증기	[준	인증	등범위		유효기한
현 황								
현장조사일자	Ļ	년	월	일 ~	년	월	일	
	심사일자							
اد اد اد اد	심사기관							
이전심사 정 보	심 사 원							
(해당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범	위						
작성)	심사결과							
	보완 등							
특이사항								

9.3.1 세부 심사내용(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미활용)

구 분	내 용
심사 중 특이사항	
적용제외 항목	
적용제외 사유	
품질경영시스템의 상호관계 확인사항	
심 사 분 야	심 사 내 용
1. 품질경영시스템	
2. 경영책임	
3. 자원관리	
4. 제품실현	
5. 측정, 분석 및 개선	
6. 심사결과	
	보완 요구사항
번 호 관련 조항	보완 내용
1	
2	
3	
4	
5	
심사 설명	

9.3.2 세부 심사내용(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활용)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 중 특이사항	
심사정보	심사기관, 심사시작일, 심사종료일, 심사기간(심사일수) 심사보고서 번호, 심사 유형(최초/갱신) 등(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결과 섹션 1, 섹션 3 참조)
심사대상 제조소 정보	심사대상 제조소의 이름, 대상기관 정보, 제조소 상세주소, 심사대상 제품과의

	상관관계	등(섹션 2~ 섹션 8 참조)						
적용제외 항목 및 사유	(섹션 9 점	<i>넥션 9 참조)</i>						
품질경영시스템의	심사대상	사대상 제조소가 수행하는 역할, 해당 제조소에서 수행하는 제조공정 등						
상호관계 확인사항	(섹션 4 원	<i>탁조)</i>						
심 사 분 야		심 사 내 용						
	아래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별표2] 4항~8항까지 심사표에 작성 결과 및 판정기준은 9.4 심사표와 동일한 기존						
	구분	심사범위		심사결. B C	과			
		11.1 프로세스 : 경영(management)						
1. 의료기기		11.2 프로세스 : 의료기기 허가 및 제조소 등록						
공동심사프로그램 		11.3 프로세스 : 측정, 분석 및 개선						
심사결과	 섹션11	11.4 프로세스 :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및 권고문 발행						
다. 1.년의 -	국간II	11.5 프로세스 : 설계 및 개발						
		11.6 프로세스 : 생산 및 서비스 관리						
		11.7 프로세스 : 구매						
		11.8 기타 발견사항						
	섹션12 섹션14	부적합(부적합 사항 및 관련 근거 확인) 과거의 부적합에 대한 후속조치						
	<u> </u>			/ 7-/ 7-/	<u></u>			
2. 제품표준서	7	내 제조·수입 제품 중 품목군별 대표품목 제품을 (제7조제1항제3호나목)	#군시	400	<i>i</i> '			
3.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요구하는 규제요구사형	<i>ት 충족</i>	여부				
자료		(제7조제1항제3호다목)						
4. 심사결과		심사단의 종합의견						
		보완 요구사항						
번 호 관련 조항		보완 내용						
		· ·						
1								
2								
심사								
설명								
	7 — =1) 🔿 =	되으된 거짓사이가 지기 가 가서(O / 지기	1	ו וו	1 1- \			

※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적합성인정 심사 시 작성(9.4 심사표 작성 생략)

9.4 심사표

품질관리기준	N N -1 -7		심사	결과)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템	가.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 절차, 활동 또는 방식을 수 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4.1.2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					

품질관리기준	શે મે નો ઢ		심사결과			심사결과			บา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 , -	2)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위험 기반 접근방법을 적용								
	3) 이러한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작용을 결정								
4.1.3	각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3)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								
	4) 이러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해당되는 경우 측정 및 분석 5) 이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4.1.4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의 변경이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3/r 2) 프로세스의 변경이 해당 품질경영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체외 진단의료기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3)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관리								
4.1.5	가. 조직이 제품의 적합성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								
	로세스를 위탁하는 경우, 조직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링 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위탁한 프로세스에 대해 이 기준과 고객 및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위탁한 프로세스의 관리는 관련된 위험 및 7.4항에 따른 요구								
	나. 귀약만 프도세스의 산디는 산단된 귀함 윷 7.4%에 따른 표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위탁업체의 능력에 비례하여야 하고, 서								
	면 품질합의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4.1.6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유 효성 확인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요성 확인에 대한 철자들 군서와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은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								
	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								
	도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재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인 접근방법과 활동들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라. 이러한 활동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서화된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4.2.1 일반 요구사									
항	3) 이 기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4) 조직이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들로, 기록을 포함								
	5) 그 밖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규정된 다른 문서화 요구								
	사항								
4.2.2 품질매뉴	가.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매뉴얼을 문서화하여야 한								
얼	다.								
	1) 적용 제외 또는 비적용 되는 세부내용 및 그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 및 이에 대한 참조								
	문서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나. 품질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구조를								
1 0 0 ±110121-141	간략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지의 가 케이지다이르기가 미테 따느 프모레 데케 이 기								
4.2.3 제외신단의 료기기파일	가. 조직은 각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해, 이 기 즈 ㅇ구시하에 저하하고 저용되는 버전 ㅇ구시하은 즈스하고 이								
エ/1/14日	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생성된 문서를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하나								
	음을 입중하기 위해, 생성된 군서를 포함하기나 삼소하는 하나 이상의 파일을 만들어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체외진단의료기기파일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								
	1 - 개 단단기요~ / 기단기 기 이 다 기 기 이 라 그 다 이 러 , 기								

품질관리기준)])] ¬] Z	심사결과			มา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 , 5	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용용도/사용목적					
	및 모든 사용지침을 포함한 기재사항					
	2) 제품에 대한 사양					
	3) 제조, 포장, 보관, 취급 및 유통에 관한 규격 및 절차					
	4)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5) 해당하는 경우,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4.2.4 문서관리	6)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4.2.4 군서관리	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4.2.5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안다. 나.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 승인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갱신 및 재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됨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유효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6)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배포상태가 관리됨을 보장					
	7)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					
	 8)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떠					
	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방법을 적용					
	다. 조직은 문서 변경이 조직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 승인권자 또는 다른 권한자에 의하여 검토					
	되고 승인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라. 조직은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의 최소 1부를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한					
	기록의 보유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4.2.5 기독관리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					
	증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안 및 완전성, 검색, 보존기					
	간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					
	[중에와 한다. 기록에 대한 현장는 주철의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야 한다.					
	마.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					
	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도 겨어케이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최고 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 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의 증거를 다음을 통하					
0.1 0 0 7 7	여 제시하여야 한다.					
	1)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의사소통					
	2) 품질방침 수립					
	3) 품질목표 수립을 보장					
	4) 경영검토 수행5)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					
5.2 고객중심	최고 경영자는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이 결정					
	되고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품질방침	최고 경영자는 품질방침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2)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포함할 것 3) 품설목표를 수렴하고 건도하기 위한 등은 제공할 것 4) 보석 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래될 것 5) 지속시인 의침성을 위하여 검토된 것 7. 최고 생명사는 통결목표가 식용되는 법식 요구사항과 제공 5.4.1 충절목표 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로 식 내의 한번 기능 및 세술에서 수입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행기의 1) 분절경영식시는 법 전통 및 제송에서 수입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분절경영시스템 기획은 품설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깃뿐만 아니라 4.1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길 수 있도록 수행한 것 2) 물건경에시스템 건형은 기계하고 성원함 때, 등건경영시스템 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 4) 환경상이 유지될 것 5.5.1 개입과 전성이 가격되고 공사 내에서 최임과 건안이 규정되고, 문서 하되어, 의시스를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5.1 기계와 전성이는 품설에 당량을 미지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환경상이 문지될 것 1) 등 건경영시스템 보관 기계를 본사하라고, 이러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한국상에 대한 권인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등 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영사는 다른 책임과 부산하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해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2) 최고 경영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조석 전반에 결치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효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2) 최고 경영자는 문식 대에서 결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우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등 경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공격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건경임 전염 교육에 대한 전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건경임에게 등실경임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건경임에서는 중절망을 및 품절목표를 보안하여 품집성임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권도에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권도에 입력사항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는백일 2) 환경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를 위해 보고사항 3) 가입 당시에 대한 보고 4) 간사이 되었다면 당한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비가 이것을 모반하여 함께 보고사항 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 기성을 위한 건고사항 1) 기성을 위한 권고사항 1) 기성을 위한 건고사항 1) 기성을 위한 권고사항 1) 기상하여 기	품질관리기준	., ., 심사		심사결과			
의지를 포함한 것 3 ** 왕절쪽표는 수입하고 감도하기 위한 등은 제공한 것 4 ** 조석 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된 것 5 ** 지수적인 핵점성을 위하여 검토텔 것 7 ** 최고 정상자는 품질목표가 식용되는 법식 요구사장과 제공 4 대의 한번 의구사원을 중작시키는데 필요한 사장을 포한하고, 조 각 대의 한번 기능 및 제출에서 수입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질복포는 속정 가능하여야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 한 반다. 나 등질복포는 속정 가능하여야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 다 한다. 1.6.4.2 충월생당시스템 기획은 증성목표를 단성하기 위한 깃뿐만 아 나라 4.1일의 공사사항을 증우시리 수 있는는 수행한 것 2) 동질생당시스템 변성을 제확하고 실행할 때, 품질생상시스템 의 관심성이 유기질 것 20 시작을 등 기기를 가장 등 하수 10 원이서 최임과 간원이 규정되고, 문서 및 의사소통 및 의사스를 받다 이 기사소통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가 경영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지는 일무를 관리, 수행 및 변경하는 모든 인원의 성조관계를 문사하라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요한 변한과 독원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생상시스템에 필요한 건보에 구성생 중에서 신입하다야 한다. 1) 품질생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점을 보장 2) 최고 생일사는 다른 책임과 무단하게 나는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생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점을 보장 2) 최고 생일사에 품질생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결과 석용되는 법식 요구사장과 품질생임시스템 요구사장에 대한 인식의 충전을 보장 2) 최고 생일사는 조직 내에서 식질한 의사소등 프로세스가 수업되 및 구사장에 대한 인식의 충전을 보장 2) 최고 생일사이스템 효과상에 대한 에 가는 등이 이루어지고 있 응은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자들에 한민 신식의 충전을 보장 16.6 생명론도 다. 소요는 경영점도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모하여, 증성경영시스템에 기속적인 회하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점도의 일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1.6.9 기급 보다 모든 경영지스스템의 기급하여 한다. 기정성도의 일본하당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일반 기계 당세에 대한 보고 1 개성을 보다 되는 기상을 이 경우적이 된다. 1 기식조치 3 이렇게 되어 되다면 및 측정 10 계성관계 모나더럼 및 측정 10 개성을 보다 또는 개정로 발적 요구사장 3 이렇게 모나더럼 및 측정 10 개성을 보다 또는 개정로 발적 요구사장 3 이렇게 보다 되는 것은 아니다. 1 의 드텔 2 필요계 및 보다 또는 개정된 발적 요구사장 3 이렇게 기상에 되었다면 및 는 보세스의 기상되어야 한다. 1 중절성생시스템에 일반 가상에 대한 다음과 라만인 모든 결심성 및 조지를 보존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 중절성생시스템 및 브로세스의 의합성,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절성생시는데 및 브로세스의 의합성,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이 있다면 및 보존세스의 의학자상,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이 있다면 및 보존세스의 의학자상,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절성생시는데 및 보존세스의 의합성,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절성생시는데 및 브로세스의 의학성, 직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에 보면 보안 개선을 보안하는에 있다면 및 보존세스의 의학자상, 직원성 및 효과상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절성생시는데 및 보존세스의 의학자상 및 조직성 및 효과상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절성생시는 데 및 보안 보다 기관 기관 및 환경상 및 호착성 및 조직상을 유지하는이 한다. 1 중심성생시는데 및 보안 보다 기관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비고
4) 조석 내에서 의시소통이 이루이지고 이해된 것		의지를 포함할 것					
5. 기속으로 인트리스는 점심으로 가 식용되는 법의 요구사원과 제품 1.4.1 중절목표 에 대한 요구사항은 충혹시키는데 필요한 사랑을 포함하고, 조 및 내의 한번 기능 및 제송에서 수입된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중절목표는 숙청 가능하여야하고 종절환화과 일환성이 있어 약 한다. 1. 6.1.2 중점성역시 제고 기업하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6.2 중점성역시 제고 기업하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6.2 중점성역시 변경을 제하고 실행할 때, 중점정성시스템 및 환경성이 유지될 것 등 증권성에 시설 변경을 제하고 실행할 때, 중점정성시스템 및 환경상는 조직 내에서 책임과 원만이 규정되고, 문서 합의 요구사항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수행한 기위이, 의사소통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 6.2 중점적임 제 경쟁자는 등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전증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운식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은 보완하여야 한다. 1. 중점정성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정업자스 반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업자는데 대한 결과 수등의 등일 보장하여야 한다. 1. 중점경업시스템이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업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등이 이루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직 건안에 결과 식용되는 법식 요구사항과 품질성임시스템을 된다하여 한다. 1. 고객업 건업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등이 이루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그리고 경업지도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기업인도에서는 중실명점 및 품실목표를 포함하여 품실건업시스템의 번원 필요성 및 개신 가능성에 대한 뭔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경기트에서는 중실명점 및 품실목표를 포함하여 품실건업시스템에 반원 필요성 및 개신 가능성에 대한 뭔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직 건안에는 공실명점 및 품실목표를 포함하여 품실건업시스템에 반원 필요성 및 개신 가능성에 대한 뭔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경험결도에서는 등실명점 및 품실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로 한점되는 것은 아니다. 10 피트백 2.2 분간하여 있는 주정 40세계 점인 무기로 중점점에서 변경 검토의 입력사와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및 한권로에 발하면 보고사항 1.0 개인로에 따른 주속조제 1.0 중점점에서 단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와 1.0 개인을 위한 권고사항 1.0 기업질에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와 1.0 기업질 및 조세스의 직상성, 직점성 및 효과성을 존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 중점점에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와 1.0 다른과 관련된 모든 개성실 및 조세스의 직험성, 직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기업 및 조세스의 직험성, 직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기업 및 조세스의 직험성, 직점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기업 및 조세스의 직험성 및 관계성 및 조세스의 직업성 및 조세스의 직업성 및 조세스의 및 조세스의 직업성 및 조세스의 직업성 및 조세스의		3)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5.4.기획 가. 최고 전영자는 품실목표가 거용되는 범격 요구사망과 제품 이 대하 요구사라는 축축기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 각 내의 관련 기능 및 개승에서 수립된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증권적보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4.2 등권경에서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4.2 등권경에서 1 등 관심명이 가능 이 사망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등 관심명에서는 법 기관 등 공목도를 답성하기 위한 첫뿐만 아니라 4.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수 있도록 수행한 것 2.5 존권경에서스템 번경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증권경에서스템 한 환원실이 유지될 것 모자를 하면 이 유명되고, 군식 맞되어, 의사소통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4.3 보고 경영자는 품실에 영향을 미지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한국하는 제 필요한 관련에 성향을 미지는 업무를 관리 수행 위고 경양자는 다른 생명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 입과 권한 일반 사람들은 보장하여야 한다 1.5.3 대부 와사 최고 경영자는 다른 생명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 입과 권한 2차 산자를 조보하다.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2.5 조건경에서 개를 보장하여야 한다 1.5 존검성에서스템에 필요한 프로젝스가 문사항을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2.5 조건경에서 대한 인식의 준건을 보장 2.5 조건경에서는데 함께 보고 2.5 조건경에서는데 함께 보고 2.5 조건경에서는데 요구사망과 품질경에서는데 요구사망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5 건강에서는데 요구사망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5 건강에서는 전에 대한 점사를 모산하여야 한다 3.6 전경점도에 대한 점사를 모산하여야 한다 4.4 작업 보이는 단시와 세월인 수기로 품질성에서스템을 됩다하여, 휴실건에서는 등실방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성임시스템을 입자하여 한다 다. 경영전문의 입에서는 등실방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하여야 한다 다. 경영전문의 입에서는 등실방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하면 보고 2.5 전경점을 입어서는 등실방점 및 품질로표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하면 보고 4.1 전략 당시하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하면 보고 4.1 전략 및 소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하면 보고 4.1 전략 및 소란 4.1 대한 및 즉칭 9.1 대한 보고 4.1 전략의 보고대한 및 즉칭 9.1 대한 보고 4.1 전략의 보고대한 및 즉칭 9.1 대한 보고 4.2 대한 보고대한 및 즉칭 9.1 대한 보고 4.2 대한 보고대한 및 즉칭 4.2 만든 대형된 및 소개를 포함하여 기득되어야 한다 1.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대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검정사항 및 조계를 포함하여 기득되어야 한다 1.1 등질경임의 출력은 검토된 입대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검정사항 및 조계를 포함하여 기득되어야 한다 1.2 관계성임식사업 및 소로세스의 의학상 및 효과성을 유격하는데 및 보로세스의 의학상 및 효과성을 유격하는데 및 보로세스의 의학상 및 효과성을 유격하는데 및 관료에서의 기관되어야 한다 1.3 관계성임식 및 보로세스의 의학상 및 효과성을 유격하는데 및 보로세스의 의학상 및 효과성을 유격하는데 되는데 가장된 4.2 전략 및 소로세스의 수가를 되었다면 다음 4.2 전략 및 소로세스의 수가를 되었다면 다음 4.2 전략 및 소로세스의 및 교육 4.2 전략이 되었다면 다음 4.2 전략이 다음 4.2 전							
*************************************	r 4 -1 -1						
의 내의 관련 기능 및 제충에서 수립됨을 보강하이야 한다. - 종실목표는 측정 가능하여야하고 품실방점과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 (소.2 품실정역시 최고 전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 증건성업시스템 변경을 개확하고 실행할 때, 품실경역시스템 의 환경성이 유지원 것 의 품실정역시스템 의 환경성이 유지원 것 의 관계성이 유지원 것 의 교육 등 전기 의사소등 의 미치는 입무를 논란, 수에 및 결중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사화하여 한다 (기 등 기계 생명자는 다른 필입과 두반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꼭 이와 전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기 등 기계 생명자는 다른 필입과 두반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꼭 이와 전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기 등 기계 생명자에 결정 기계 등 기계 등 사항을 보고하여 한다 (기 등 기계 등							
나, 품질목표는 측정 가능하여야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 한다. 이 한다. 1) 품실경업시스템 건치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기획 1) 품실경업시스템 건경는 재회하고 실행할 때, 품실경영시스템 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 2) 품질경업시스템 건경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품실경영시스템 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 2) 사소통 점 보기는 지료 생각하는 조직 내에서 채임과 관한이 규정되고, 문서 화되어, 의사소통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5.5.1 책임과 리찬, 최고 경영자는 품실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건승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실경업시스템에 필요한 근세소가 문서화됨을 보장으에 여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건취 직용되는 법의 요구사항과 품질경임시스템 교자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건취 직용되는 법의 요구사항과 품질경임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의식의 증권을 보장 2) 최고 경영전에게 품질경임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해 보고 3.5.3 내부 와사최고 생용자는 조직 내에서 직원한 의사소등 프로세스가 구립되고, 품실경업시스템 교자성에 대하여 의사소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는 보장하이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생용자는 문사회원 개회된 주기로 품질경임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경영검토에 대한 전자를 문사회하여야 한다. 3. 경영지는데의 지속되인 색함성, 직접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어야 한다. 1. 경영검토에 관한 기측은 유지하여야 한다. 2. 생명검토에 대한 전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생명검토에 관한 기측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경영지는의 업데사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로 기업감도의 업데사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9) 이전 경영건도에 따른 푸속조지 10) 품실경임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작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3) 가실을 위한 권고사항 13) 작용로의 모니터링 및 측정 (3) 대장조직 9) 이전 경영건도에 따른 푸속조지 10) 품실경임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작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2) 작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3) 가실을 위한 권고사항 12) 작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3) 가실을 위한 권고사항 12) 작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3) 가실을 위한 권고사항 13) 작용되는 전기로 대응과 관련된 모든 건강사항 및 조직을 보잡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1) 점점을 보고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1) 점점을 보고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2) 전용되는 전구 또는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 13) 가실을 가실을 가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상 기상이 시작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으로 기상이 시작성 및 효과식을 유지하는데 및 으로 기상이 기상이 있어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으로 개상이 기상이 있어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으로 개상이 기상이 시작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의료에 가실을 가상이 기상이 있어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의료에 가실이 및 소리성 및 효과식을 유지하는데 및 의료에 보다 제상이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항 의료에 보다 제상이 및 관리 및 관	5.4.1 古色雪丘						
아 한다. 1.0 중절경영시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랑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중절경영시스템 기회을 제체하고 실제한 때, 품질경영시스템 의 안전성이 등지료 것 2.1 중절경영시기를 변경을 제체하고 실제한 때, 품질경영시스템 의 안전성이 용지료 것 3.5.5 책임, 건한 첫 최고 경영자는 존전에 대한 요한 교환이 규정되고, 문서 화되어, 의사소통점을 보강하여야 한다. 3.5.1 책임과 권 다 최고 경영자는 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주혜 및 한국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4.1 중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리고, 이리한 업무를 연해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1.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인계로 경영경에서 설망하여야 한다. 1.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인계로 경영경에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의로 경영경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증권형 보장 보조세스가 무대되 모조구사와에 대한 인식의 증권형 보장 의로 관계에서 의결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대되 모조구사와에 대한 인식의 증권형 보장 보고 세계로 구기로 등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권형 보장 나 최고 경영자는 존의 내에서 의결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3.5.3 내무 의사기 최고 전영자는 조의 내에서 의결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대되 모조구사와에 대한 인식의 증권형 보장 보고 세스가 나 최고 경영자는 본자와인 대한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6 경영검토 가 최고 경영자는 본자와인 제원인 주기로 즐길정에시스템을 검 보장하여야 한다. 1.7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3.6.2 건도인력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3.6.3 건도인력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1.1 괴트맨 2.1 발박처리 3.1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1 감사 5.2 보내다의 보니다면 및 즉정 6.1 개공되고 보니다면 및 즉정 7.1 시정조지 8.1 예반조지 9.1 이경조제 9.1 이경조제 9.1 이경 경영 전문에 따른 후속조계 10.1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1 실망적으로 출약을 가는 관련사항 1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1 전문 모든 계정의 법식 요구사항 13.2 전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리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2.2 프로세스의 불리는 감토인 임실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리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4.2 품집생명시 최고 전명자는 다음 사랑은 보장하여야 한다 이 품질쟁임시스템 기획은 품질목표를 단정하기 위한 첫뿐만 아니라 4.1학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행한 것 2) 품질정영시스템 반경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품질정영시스템 인원성이 유지될 것 4) 환경상이 소리될 것 5.5.1 책임과 권한가, 최고 경영자는 조식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고, 문서 청되어, 의사소통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5.5.1 채임과 권한의 보장인과 등로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5.5.2 품질팩임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단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 전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모시하라고, 문화는 생기로 기반하는 대문 책임과 무단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 지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정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전에 제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상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정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인을 보장 기원기로 경영자는 도착에서 세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업되고, 품질정영시스템 효과상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직은 전쟁진들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6.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원 개최된 무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실방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실경임시스템의 건축이 변경 원요성 및 개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기업감도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기업감도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기계 당기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가게 당지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주속조지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신을 위한 권교사항 11) 개신을 위한 권교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1) 개선을 기관 보관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2 점심점으로에 장려진되어 마른 모수조지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 작용되는 신규 또는 개점된 앱의 요구사항 13 기관에 보관 관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3 기관에 보관 전략으로 기관되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경영시간 및 포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모르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이 전함적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이 전함적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조과생으로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교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교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교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표과성을 유지하여 및 프로세스의 격합성 및 표과성을 유지하는데 및 요구사의 기상점 및 표과성을 유지하여 및 교과성을 유지하여 및 표과성을 유지하여 및 표과성을 제공적 및 표과성을 무대하여 및 표과성을 무대하여 및 표과성을 위해 및 표과성을 위해 및 표과성을 제공적 및 표과성을 위해 및 표과성을 제공적 및 표과성을 위해 및 표과성을 위해 및 표과성을 제공적 및 표과성을 위해 및							
니라 4.1항의 요구사항을 송혹시킬 수 있도록 수행한 것 2) 통결정당시스템 변경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종결정당시스템 의 환경성이 수직될 것 의 시소성동 의 의사소통 라이트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사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사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한과 통실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5.5.2 품설책임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인과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작의 구성된 중에서 설임하여야 한다. 1) 종결정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영자는데 변경을 보장 4 입과 경영자는데 대한 일소의 증권을 보장 3) 조각 천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업되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업되고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조식은 경영검토에 대한 엔사의 중권을 보장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원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업시스템을 건 토하여, 한편시는데 최고 장영자는에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대한 전상을 및 품전목표를 포함하여 품전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중심방원 및 품전목표를 포함하여 품전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환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니 경영검토에 할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개성됩토의 입역사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라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청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직 10) 품건경영시스템에 약하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권단은 모든 결정사항 및 조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개선을 위한 건보자항 11) 개선을 위한 건보자와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계를 포함하여, 기목되어야 한다. 1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직건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2) 품질성이시스템 번정을 제화하고 실행할 때, 품질성이시스템 및 인간이 유지될 것 9 의사소통 5.5.1 책임과 권한가, 최고 경영자는 조곡 내에서 채임과 관련이 규정되고, 문서 및 의사소통 5.5.1 책임과 권 나, 최고 경영자는 중절에 영향을 비치는 입부를 판리, 수행 및 권증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한제를 문서화하고, 이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경이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전에게 품질경이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안에 걸쳐 작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이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권을 보장 2) 최고 경영전에게 품질경이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안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이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권을 보장 2.6.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제스가 수립되 소통 로본장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제원을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 당하여, 통결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직항성, 직접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 스테의 법적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중절경영시 스테의 법적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경염검도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즉정 7) 시점조치 8) 예방조치 9) 이건 정임점도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성에시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 선명되는 전부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2) 선명되는 및 존심사항 및 프리세스의 직학성, 직접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및 프로세스의 직향성, 직접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및 프로세스의 직향성, 직접성 및 효과성을	스템 기획						
의 완전성이 유스팅 것 : 5.5 책임. 권한 가. 최고 정명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과 관한이 규정되고, 문서 및 의사소통 가 되고 정명자는 동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반대, 수행 및 권증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5.2 품질책임 최고 경영자는 타른 채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진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그 경로 전쟁에서 플심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시의 금진을 보장 기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3 내무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대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직은 건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개획된 주기로 품실경영시스템을 검사항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건토에서는 품질병임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역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건토에서는 품질병임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급명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장하여 한다. 1. 기료 및 보장하려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급명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보안되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각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경조치 8) 예방조지 9) 이전 검영건토에 따른 후속조지 10) 품건경역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건교사항 12) 계용되는 신급 또는 개정된 업체 요구사항 12) 계용되는 신급 또는 개정된 업체 요구사항 13 등집성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4 등집성임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5 핵임, 권한 가,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과 권환이 규정되고, 문서 황되어, 의사소통된을 보장하여야 한다. 5.5.1 책임과 건나, 최고 경영자는 품건에 영향을 미지는 업무를 반리, 수행 및 건축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한계를 모시하하고, 이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건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권을 보장 2. 최고 경영자는 다른 핵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핵 임과 권한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5.3 내꾸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실경영시스템 연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6.6 경영점도 자. 조직은 경영검도에 대한 결사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최고 경영자는 모시 바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실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건축에는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목은 유지하여야 한다. 6.6.2 검토입력 경영검도의 업목사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본 경영검도의 업무사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본 기계를 보고 있는 아니다. 1) 피트백 2. 출안지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청조직 8) 예방조지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 및 작후 존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출 수 있는 변경사항 1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1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1.1 품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2.1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3.1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3.1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4.1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5.6.3 검토출력 명양보는 결정사항 및 조괴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6.7 등질경영시스템 및 조르세스의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원료한 개선							
3 의사소통 3 의자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기 생임자는 품질에 영향을 비지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건축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리한 업무를 전쟁하는대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경역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역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개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적 전반에 결처 전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역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인을 보장 3 교육 경영자는 다른 역의 구성명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역시스템 효과성에 대하 인의 중인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조직 전반자 결과 전역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이 이무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직은 경약경도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 조직은 경약경도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 조직은 경약경도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경안경토에 대한 경화를 문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건당하여야 한다. 1. 경양검토에 사한 구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양검토에 반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1. 경영검토의 업면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본 한경되는 것은 아니다. 11 피트백 2) 불안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에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교사항 12) 제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2) 품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1 등질경영시스를 필요되는 기록되어야 한다. 11 등질경영시스를 모르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5 채이 권하						
한 간 의 경영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건축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5.2 품질책임 최고 경영자는 다른 핵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결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영자에게 품권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저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5.5.3 내무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식 내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1 입반 요구 사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입반 요구 사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당하여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건당하여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유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한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하다. 3) 규제 당고에 대한 보고 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하다. 1) 피드백 2) 불반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청조직 8) 예방조직 9) 이천 경영검토에 따른 추속조지 10) 품질경어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장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지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장 12) 작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지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조리를 보고세스의 제합성, 직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및 의사소통						
한 건축하는 모든 인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5.2 품전쟁임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료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전치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권을 보장 5.5.3 내무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상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 경영검도 가. 조작은 경영건도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단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치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건당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치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한다. 의 한국에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청조치 8) 예방조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의 10) 품건경영시스템 및 학정 10) 품건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점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생경감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경정사항 및 조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한다. 1) 품건경영시스템 및 조르세스의 적합성, 격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						
5.5.2 품질책임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 집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원을 보장 2) 최고 경영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결처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건을 보장 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었다.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전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6.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원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6.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3년 기관되어야 한다. 1) 품질검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취합성, 취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한						
지 인과 권한을 갖는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천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5.3 대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전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사화하여야 한다.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당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착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칭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6.2 검토임력 경영건도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청조치 8) 에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0) 품질경임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작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0) 품질경임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관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진을 보장 5.5.3 내부 외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전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정영시스템을 건 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작합성, 직원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대한 결자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6.6.2 검토입력 경영검토에 대한 공한병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병원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함액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인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실정역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제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됨을 보장 2) 최고 경영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5.3 내무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 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작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2) 최고 경영전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찍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진을 보장 5.5.3 내부 외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대에서 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4 영연검토 가. 조직은 정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다한 절차를 모하하여, 점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전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합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1) 괴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지 8) 예방조치 9) 이건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지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최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에 대해 보고 3) 조직 전반에 걸쳐 석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인을 보장 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결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결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건물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트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양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3) 조직 전반에 걸쳐 작용되는 법찍 요구사항과 품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중진을 보장 3.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7 영업 도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압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7 성건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식 내에서 직접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 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 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작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하나, 이것들 (Input)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지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직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5.3 내부 의사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6.7 영업도 기.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소통 고,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식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차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작합성, 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임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 5 3 내부 의사						
응을 보장하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분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소통						
5.6 경영검토 가. 조직은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Input)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르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0						
다항 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6 경영검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3.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6.1 일반 요구	나.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사항	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Input)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보장하여야 한다.					
한다.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결정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다.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					
라.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6.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결정 관리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Input) 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F C O - 기뉴이크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 ,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 ·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Output)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Output)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5.6.3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은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Output)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품질관리기준	심시		심사결과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 , ,	3)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					
	4) 자원의 필요성					
6. 자원관리	조직은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6.1 자원의 확보	1)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그 효과성 유지					
6.2 인적자원	2)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 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0.2 한격자현	교육, 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직은 인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립하고, 인원에게 필					
	요한 훈련을 제공하며, 인원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필요					
	한 역량을 결정 2) 필요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조치 실시					
	3)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평가					
	4) 조직의 인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					
6.3 기반시설	5) 교육, 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					
0.3 기반시결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혼 입을 방지하며, 순차적인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					
	답을 당시하며, 군사적인 뒤답을 모장하기 뒤해, 필요만 기반시 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기반					
	시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건물, 작업 공간 및 관련된 부대시설					
	2)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 운송, 통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지원 서비스					
	나. 조직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의 부족					
	으로 인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기를 포 함하여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취망되는 경우, 요구사항은 제조,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모니터					
	링 및 측정에 사용된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유지활동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6.4 작업환경과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오염관리	작업환경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4.1 작업환경	나. 만일 작업환경조건이 제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사항과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					
	있는 경구, 직접환경에 대한 표구자영과 환경조건을 모니더당아 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다음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제품 또는 작업환경과 접촉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업원의 건강,					
	청결 및 복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특별한 환경조건에서 임시로 작업하는 모든 인원은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역량을 갖춘 인원에 의해 감독되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6.4.2 오염관리	가 한다. 가.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작업환경, 작업원 또는 제품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되었거나 잠재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멸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조직은 미생물이나 미립자					
	로 인한 오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립					
	또는 포장공정 중 요구되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제품실현	가. 조직은 제품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제품실현의 기획은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 요구					
기획	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조직은 제품 실현 시, 위험 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					
	스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					
	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		심사결과			_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C	D	비고
77 1 1 1 8	다.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제품실현의 기획에 있어 다음 사항					
	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품질목표 및 요구 사항					
	2) 프로세스 수립 및 문서화 그리고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을 포					
	함한 제품에 대한 특정한 자원 확보의 필요성					
	3) 제품 적합 판정 기준과 함께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검증,					
	유효성 확인, 모니터링, 측정, 시험검사, 취급, 보관, 유통 및					
	추적 활동					
	' ' = ' 4) 제품실현 프로세스 및 그 산출물이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입					
	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라. 이러한 기획의 출력은 조직의 운영방식에 적절한 형태로 문					
	서화되어야 한다.					
7.2 고객 관련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1)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					
7.2.1 제품과 관	한 요구사항					
련된 요구사항의	2) 고객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알려져 있는 명시된 사용					
결정	또는 의도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3)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4)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시된 성능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훈련					
	5) 그 밖에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7.2.2 제품과 관	가. 조직은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련된 요구사항의	검토는 조직이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기 전에 수행					
검토	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문서화할 것					
	2) 이전에 제시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3)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 될 것					
	4) 7.2.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 훈련이 가능하거나 가능하도					
	록 계획 될 것					
	5) 조직은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나. 검토 결과 및 검토에 따라 수반되는 조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지 않는 경우, 조직은					
	수락 전에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은 관련 문서를 변경하					
	고 관련된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7.2.3 의사소통	가. 조직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					
	법을 계획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1) 제품정보					
	2) 수정사항을 포함한 문의, 계약 또는 주문 처리					
	3) 불만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4) 권고문					
	나.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규제 당국과 의사소					
T 0 2]=1 -1 "	통 하여야 한다.					
7.3. 설계 및 개	고기스 서계 미 제비의 제작 기의로 만지되다고 그 그					
발	조직은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3.1 일반사항 7.3.2 설계 및	가. 조직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					
7.3.4 결제 옷 개발 계획	다. 조식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설계 및 개발 계획 문서는 설계 및 개발이					
/미르 /미딕	진행됨에 따라 유지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나. 조직은 설계 및 개발 계획 중에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개발 단계					

품질관리기준	ט ט ט ט		심사결과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Α	В	C	D	비고
	2)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필요한 검토					
	3)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적절한 검증, 유효성 확인 및 설계이 관 활동					
	선 설명 4)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					
	5)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출력의 추적성을 보					
	장하기 위한 방법					
7.3.3 설계 및	6) 필요한 인원의 역량을 포함한 필요 자원 가.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입력 사항을 결정하고, 기					
개발 입력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입력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의도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 성능, 사용적합성 및 안전 요구사항					
	2)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및 표준(standards)					
	3) 적용되는 위험관리 출력물					
	4) 해당되는 경우, 이전의 유사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5) 제품 및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5) 세품 및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월에 월구적인 기타 요구사항 나. 이러한 입력은 적절성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다. 제품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되거					
	나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7.3.4 설계 및	않아야 한다. 가. 설계 및 개발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개발 출력	1) 설계 및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					
	2)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제품 적합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4)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4) 한잔아고 늘마는 사용에 불구적한 세점의 특성을 비성할 것 나.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의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사항과					
	비교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배포 전에 승인					
	되어야 한다.					
7.3.5 설계 및	다. 설계 및 개발 출력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계획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					
(review)	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개발 결과의 능력에 대한 평가					
	2) 필요한 조치의 파악 및 제시					
	나. 이러한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은 검토 중인 설계 및 개발 단					
	계와 관련되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다. 검토 결과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고,					
	검토 중인 설계의 식별, 검토에 참여한 인원 그리고 검토 일자를					
7 2 요 서킈 미	포함하여야 한다. 기 서계 미 개발 초점이 이런 ㅇ그기차ㅇ 초조된느가 ㅂ자된기					
	가.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설계 및 개발 검증을 수					
(verification)						
	나. 조직은 검증 방법, 합격 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샘플 크기					
	에 대한 근거와 함께 통계 기법을 포함한 검증 계획을 문서화 하					
	여야 한다.					
	다. 의도된 사용에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다른 체외진단의					
	료기기와 연결 또는 접속하도록 요구한다면, 검증은 그렇게 연					
	결되거나 접속될 때 설계 출력이 설계 입력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검증 결과 및 결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E 0 E 21 20 - 2 2	한다.					
[7.3.7설계 및 개	가.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은 결과물인 제품이 의도된 사용					
발 유효성 확인	TE 8/12 48 (Specified application) if the mily 8 ii					
(validation)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나. 조직은 유효성 확인의 방법, 합격기준, 그리고 해당되는 경					

품질관리기준			심사	결과		_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C	D	비고
٠٠١/١٥	우, 샘플 크기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유효성 확인 계획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다. 설계 유효성 확인은 대표 제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대표					
	제품은 초기 생산 단위, 배치 또는 그와 동등한 제품을 포함한					
	다. 유효성 확인에 사용된 제품 선택 근거는 기록되어야 한다.					
	라.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의 일부로서, 조직은 적용되는 법					
	적 요구사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 사용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고객의 사					
	용을 위해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의도된 사용에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다른 체외진단의					
	료기기와 연결 또는 접속하도록 요구된다면, 그렇게 연결하거나					
	접속할 때 명시된 적용이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을 포함하여 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 유효성 확인은 고객의 사용을 위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완					
	료되어야 한다.					
	아. 유효성확인 결과와 결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					
	되어야 한다.					
7.3.8 설계 및	가. 조직은 설계 및 개발 출력을 제조로 이관하는 절차를 문서화					
개발 이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최종 생산 사					
	양으로 되기 전에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생산 능력					
	이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이관 결과와 결론은 기록되어야 한다.					
	가. 조직은 설계 및 개발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개발 변경의 관	한다.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능, 성능, 사용적합성, 안					
리	전성, 적용되는 법적요구사항 및 의도된 사용의 변경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변경 실행 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검토					
	2) 검증					
	3) 해당되는 경우, 유효성 확인					
	4) 중인					
	다.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검토는 구성부품, 제조중이거나 이미					
	인도된 및 제품, 위험관리의 입력 또는 출력, 그리고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변경과 변경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					
7.3.10 설계 및	지되어야 한다. 가. 조직은 각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파일	개발 파일을 유지하여야 한다.					
,, _ , _	나. 이 파일은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성된 기록과, 설계 및 개발 변경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거나 참조하여야 한다.					
7.4. 구매						
7.4.1 구매 프로	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세스	나. 조직은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					
	다. 기준은 다음사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					
	의 능력					
	2) 공급자의 성과					
	3) 구매한 제품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4)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된 위험에 비례					
	다. 조직은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					

품질관리기준	2 2 -1 -7	심사결과				n)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 , , =	다. 구매한 제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급자의 성과를 모					
	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공급자 재평가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제공해야 한다.					
	라. 구매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구매 제품과 관련된 위험, 그리					
	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와 비례하여 공급자와 함께 처리					
	되어야 한다.					
	마. 공급자 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 선정, 모니터링 및 재					
	평가 결과와, 이러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결					
7.4.2 구매정보	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구매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 ,, 0	제품을 기술하거나 참조해야 한다.					
	1) 제품 사양					
	2) 제품의 승인,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3) 공급자 인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4)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나. 조직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					
	의 적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구매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가 조직이 규정한 구					
	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매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제품의 변경사항을 조직에					
	게 통보하는 서면합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조직은 7.5.9항에 규정된 추적성이 요구되는 범위까지, 관					
7.4.3 구매품의	련 구매정보를 문서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조직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					
7.4.3 구매품의 검증	가. 소식는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표구사항에 식법암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					
T 0	는데 월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월등을 무렵하고 철행하여야 한다. 검증 활동의 범위는 공급자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매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나. 조직이 구매 제품					
	에 대한 어떤 변경을 알게 될 때, 조직은 이러한 변경이 제품실					
	현 프로세스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다. 조직 또는 조직의 고객이 공급자의 현장에서 구매 제품을 검					
	증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은 구매 정보에 의도된 검증 활동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검증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제품이 사양과 일치함을 보장하기 위					
	해 계획되고, 실행되며, 모니터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해당되					
	는 경우, 생산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다음사항들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1) 생산 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문서					
	2) 기반시설의 적격성					
	3) 공정 매개변수 및 제품 특성 모니터링 및 측정 실행					
	4)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사용 가능성과 사용					
	5) 기재사항 및 포장 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활동의 실행					
	6) 제품 출고,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나. 조직은 7.5.9항에 규정된 범위까지 추적성을 제공하고, 생					
	산 및 판매 승인된 수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체외진단의료기					
	기별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배치별 기록을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검증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7.5.2 제품의 청	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청결 또는 제품 오염 관리					
[결	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1) 또는					
	2)에 적합하게 세척되는 경우 6.4.1항의 요구사항은 세척공정					
	이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질관리기준	2 2 2 7	심사결괴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1)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조직에 의하여 세척(clean)되는 제품					
	2)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 공정(cleaning process)을 필요					
	로 하는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제품					
	3) 제품이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될 수 없고, 청결이 사용					
	상 중요한 제품					
	4)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며,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5) 공정에서의 사용물질(process agents)이 제조과정에서 제품					
7 5 9 서키 하도	으로부터 제거되는 것 기 레마디노 거의 기기의 레이지디이크리기의 서기 및 서기					
/.0.5 결시 활동 	가.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설치 및 설치 검증을 위한 허용기준(acceptance criteria)을 문서화하여야 한					
	다.					
	다. 고객이 조직이나 공급자 이외에 외부 관계자에 의한 설치를					
	허용한 경우, 조직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설치 및 설치 검증을 위					
	한 문서화된 요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설치 및 설					
	치 검증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4 서비스 활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조					
동	직은 서비스 활동 수행과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요 시 서비스 절차, 참고 자료(Reference materials) 및					
	측정기준(Reference measurements)을 문서화해야 한다.					
	나.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직 또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정보가 불만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결정					
	2) 해당되는 경우, 개선 프로세스의 입력					
	다. 조직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서비스 활동 기록은 유지되어야					
7.5.5 멸균 체외	한다.					
진단의료기기에	조직은 각 멸균 배치에 사용된 멸균공정의 매개변수(parameter)					
	에 대하 기록은 유지하여야 하다. 면규기록은 체인지다이르기기					
사항	의 각 생산 배치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조직은 결과로 나타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					
서비스 제공 프	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는 모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효성 확인에는 제품의 사					
	용 또는 서비스 인도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확 인 (Validation)	포함한다.					
(varidation)	나. 유효성 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일관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프 로세스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다음을 포함한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문서					
	화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규정된 기준 2) 장비 및 인원의 적격성3) 특정한 방법, 절차 및 합격 기준의					
	사용					
	4) 해당되는 경우, 샘플 크기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통계적 기법					
	[월 5)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6) 유효성 재확인 기준을 포함한 유효성 재확인(revalidation)					
	7)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 승인 라. 조직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용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러한 소프트웨어 적용은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					
	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까요성이 복인되어야 한다. 코르트웨이 ㅠ요성 복인 및 ㅠ요성 재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활동들은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도록,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 한다. 마. 유효성 확인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으로 인해 필요					
	한 조치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L
	가. 조직은 멸균 및 멸균보호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유효성 확					
균포장 프로세스	인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u></u>

품질관리기준	2 2 1 7	심사결과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C	D	비고
의 유효성 확인	나. 멸균 및 멸균보호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는 최초 사용 전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제품 또는 프로세스 변경 전에 유효					
에 대한 특별 요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유효성 확인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5.8 식별	가. 조직은 제품 식별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제품실현의 전반에 걸쳐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제품 실현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제품의 생산, 보관, 설치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통과하					
	거나, 승인된 특채에 따라 출하된 제품만이 출고(dispatch), 사					
	용 또는 설치됨을 보장하도록 제품 상태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조직은 체 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고유기기식별표시(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라. 조직은 조직에게 반품된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식별되고 적합 한 제품과 구별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직은 추적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					
7.5.9.1 일반 요 구사항	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추적성의 범위와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은 규저하여야 하다					
7.5.9.2 추적관	하는 기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사용된 부품, 원자재 및 작업 환경 조건으로 인해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규정된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추적성이 필요한 기록에는 사용된 부품, 원자					
의료기기에 대한	재 및 작업 환경 조건의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 요구사항	나. 조직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서비스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판매 기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기					
	록이 조사 시 이용가능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 출고된 제품 인수자(shipping package consignee)의 성명과					
7 5 10 3 3N 3N 3N	주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10 고격사산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제품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고객자산이 제 조업자의 관리 하에 있거나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 중에 있는 경					
	우, 조직은 이를 식별, 검증, 보호 및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자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7 5 11 - N T A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11 제품의 보존	가. 조직은 가공, 보관, 취급 그리고 유통 시 요구사항에 대해, 제 품의 적합성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보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구성하는 부품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 보관, 취급 및 유통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건 및 위해					
	요인에 노출될 때,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이 변조,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포장과 운반 용기를 설계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2) 포장으로만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특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라. 특수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은 관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	가. 조직은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					
리 강미의 판	행되어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과 필요한 장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활동이 수행됨을 보장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국제 기준 또는 국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측정표준에 의하여 사용					
	전 및 일정 주기로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할 것					
	2)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재조정 할 것. 이러한 조정이나 재조정은 기록할 것					
	3) 교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4)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 할 것 5) 취급, 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라. 조직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마. 조직은 장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					
	전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조직은					

품질관리기준		심사결과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바. 조직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는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및 유효성 재확인과 관련된구체적인 접근방법과 활동들은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도록, 제품 성능에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여야한다. 사. 유효성확인에 대한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으로인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및 개선	가. 조직은 다음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적합성 입증 2)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3)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유지 나. 이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절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8.2 모니터링 및 측정 8.2.1 피드백	가.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 측정의 하나로, 조직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조직은 피드백 프로세스를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피드백 프로세스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피드백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정보는 제품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제품실현 또는 개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의 잠재적 입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서 조직이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는 피드백 프로세스의일부가 되어야 한다.					
	가.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과 책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 수신 및 기록 2) 피드백이 불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평가 3) 불만 조사 4) 정보를 해당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5) 불만 관련 제품의 처리 6) 시정 또는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나. 조사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의한 모든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다. 조사결과 조직 외부의 활동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조직 내·외부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마. 불만 처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 보고	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부작용 보고 대상 또는 권고문 발행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불만이라면, 조직은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나. 규제 당국에 보고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2.4 내부감사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이 다음과 같은지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획되고 문서화(수립, 실행 및 유지)된 결정사항, 이 기준 요구사항, 조직이 설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나. 조직은 감사 계획 및 실시, 감사 결과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한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감사프로그램은 감사 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감사 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감사자를 선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가 수행된 프로세스 및 감사 대상 분야, 결론을 포함한 감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 되어야 한다. 라.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지체 없이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품질관리기준		심사결과		,	_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Α	В	C	D	비고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되는					
1 , , , , , , , ,	경우 측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 은 해당 프로세스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측정	는 애정 프로세스가 계획된 설파를 결정할 수 있음을 입중하였다.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조직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니터링 및 측정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되고 문					
	서화된 결정사항 및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작절만 단계에서 구행되어야 한다. 나. 합격판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					
	출하를 승인한 사람의 신원이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측정활동에 사용된 시험 장비가 식별되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계획되고 문서화된 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 제품					
	이 출고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추적관리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조직은 모든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인원의 신원을 식별하고 기록해야 한다.					
8.3 부적합 제품	가.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					
의 관리	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8.3.1 일반 사항	한다. 조직은 부적합 제품의 식별, 문서화, 분리, 평가 및 처리					
	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절차를 문서화하					
	여야 한다. 나. 부적합의 평가에는 부적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외주업체의 조					
	사와 통보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평가,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부적합 상태와 취해					
	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조직은 부적합 제품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2) 본래 의도된 사용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3) 특채 하에 사용, 출고 또는 수락을 숭인					
치	나. 조직은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고, 승인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채가 허용됨을 보장하여야 한					
	다. 특채에 의한 수락 및 특채 승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					
ാ ാ റി — ക്ഷി	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 제품이 인도 또는 사용 후 발견되면 조직은 부적합으					
	기. 구역법 제품이 인도 또는 사용 후 발견되면 조석는 구역법으로 로 인한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포이 대우 조	한다.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지하기 네이 도	나.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권고문 발행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여야					
8.3.4 재작업	한다. 권고문 발행과 관련된 조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0.3.4 세작됩	가. 조직은 제품의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초 절차와 동일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작업 완료 후, 제품이 적용되는 합격기준과 법적 요구사					
	항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0 4 리시티시	다. 재작업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4 데이터의 분석	가.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적절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					
1000円	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는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통계적 기법 및 그 기법의 적용 범위와 함께					
	적절한 방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의 분석은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부터 그리고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다음 입 려시하으 교하되었다.하다					
	력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드백 2)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2) 제품 표구사양에 내만 직접성 3) 개선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3) 개선에 대한 기외를 도립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국정과 정상 4) 공급자					
	5) 감사					
	ол ц і					

품질관리기준	2 2 7		심사	심사결과	,	
요구사항	심 사 기 준	A	В	С	D	비고
	6)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보고서					
	다. 데이터 분석 결과 품질경영시스템이 적합, 적절 또는 효과적이					
	지 않다고 밝혀지면, 조직은 8.5항에서 요구되듯이 개선을 위한 입					
	력으로 이 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 개선	조직은 품질방침, 품질목표, 감사 결과, 시판 후 감시, 데이터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					
사항	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					
	기 안전성 및 성능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경을 식별					
	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8.5.2 시정조치	가. 조직은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시정조치는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					
	한 부적합의 영향에 비례하여야 한다.					
	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적합의 검토(고객 불만 포함)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 필요한 조치의 계획 및 문서화, 해당되는 경우 문서 개정을 포함					
	한 조치의 실행					
	5) 시정조치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6)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라. 모든 조사 결과와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3 예방조치	가. 조직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					
	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					
	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례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계획과 문서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예방조치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5)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다.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1. 평가표

- 가. "A(적절함)" 이라 함은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B(보완필요)" 라 함은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의 입증근거 또는 실현가능성, 기록의 적절성 등이 미흡하여 개선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다. "C(부적절함)"라 함은 "보완필요"에 대해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령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라. "D(해당없음)" 이라 함은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판정기준

가. 적 합

- 1) 심사기준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A(적절함)"인 경우
- 2) 심사기준별 심사결과 다른 항목은 모두 "A(적절함)" 이면서 일부 항목[4.1부터 6.3항목(4.2.3항목 제외) 및 8.2.4 항목]에서 "B(보완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직전 심사결과 동일항목에 "B(보완필 요)" 또는 "C(부적절함)"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나. 보완

심사기준별 심사결과 다른 항목은 "A(적절함)" 이면서 일부 항목에서 "B(보완필요)"가 있는 경우(다만, 가목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 부적합

- 1) 보완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 2) 심사에서 평가표의 평가결과 1개 이상의 "C(부적절함)"가 있는 경우